

문서번호	기안용지			시행상 특별취급
문서번호	(전화: 731-6393)			
보존기간	시장			
수신처 보존기간				결재
시행일자				부시장
보 조 기 관	부 서 장 전 거 가 자 당	협 조 기 기 장	협조통제관 행정부 법무 담당관찰관 (고시안침사)	제
기안책임자	개량2과장 심관희			발 송 인
경 유 수 신 참 조	각안 참조			1986.8.26
제 목	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 및 고시			1986.8.22

(제1안) 내부 결재

고시제 6/22

1. 건설부고시 제512호 (85. 11. 22)로 주 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되었고,

서울특별시 고시 제182호 (86. 3. 21)로 지적고시된 상계 제4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5조 (재개발사업 계획의 입안 및 결정) 및 제6조

(재개발사업 계획의 기준)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(권한의 위임) 제1항

3호 및 제56조 (특례) 6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고,

같은 법 시행령 제6조 (재개발사업 계획의 결정고시)의 규정에 의거 별안

(제2안)과 같이 고지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상계 제4주 택개량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1부

(제2안) 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

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

1505-25(2-1) 일(1)감
85.9.9 송인

190 mm x 268 mm 인쇄용지 2 금 60g/m²

1. 건설부고시 제512호(85. 11. 22)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

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82호(86. 3. 21)로 지정 고시된 상계

제4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5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6년 8월 일

결재
서울특별시 장

가. 재개발사업의 경위 : 상계 제4구역 제1지구 및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

나. 구 역 명 : 상계 제4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제1지구 및 제2지구

다. 면 적 : 80,116 m² - 제1지구 : 51,739 m²
- 제2지구 : 28,377 m²

라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별첨도서 및 도면 표시와 같음(생략)

마. 건축 계획

구 분	건 빼 을	용 적 을	높 이	주 된 용 도
상계4-1지구	28% 이하	280% 이하	45 m 이하	공동주택
상계4-2지구	25% 이하	260% 이하	45 m 이하	공동주택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저희서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
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
에 따라 관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지안 사본 2부 풀.

(제4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도시개발과장

제목 :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(보고)

1. 건설부고시 제512호 (85. 11. 22)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
시 고시 제182호 (86. 3. 21)로 지적고시된 상계 제4주 택개량재개발구역에
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56조
및 58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1. 고지안 사본 1부

2.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1부

(제5안)

수신 : 도봉구청장

참조 : 주 택과장

제목 :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(동보)

1. 괴구 관내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
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하였기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

2.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증명발급 등 도시계획

관련 업무 처리에 차오도록 할 것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
2.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1부

(제6만) 8월

수신 : 시설계획과장, 도시계획과장 발신 : 과장

제목 : 상계 제4 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(통보)

1.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

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
통보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
2. 상계 제6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1부 끝.

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

1. 계획대상

- 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상계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
- 나. 구 역 위 치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 172, 173번지 일원
- 다. 계 획 면적 : 80.116 m²
- 라. 정비 대상 건물 : 1,901동

2. 사업계획 기본방향

-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지구 분할 시행
- 지구별 일단의 주택자 조성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

3. 부분별 사업계획 결정조서

- 가.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(도식재개발법 제6조의 2)

지구명 내 용	상계제4구역제1지구	상계제4구역 제2지구
위 <i>후시정</i>	서울·도봉구 상계동 173번지 일원	서울·도봉구 상계동 80, 172번지 일원
계 획 면적	51.739 m ²	28.377 m ²
정비 대상 건물	1,528동	373동

나. 도지 이용 계획

용 도	계		제 1 지구		제 2 지구	
	면적(m ²)	%	면적(m ²)	%	면적(m ²)	%
계	80.116	100	51.739	100	28.377	100
택지	66.903	83.5	42.848	82.8	24.055	84.8
도로	6.734	8.4	2.412	4.7	4.322	15.2
존치	6.479	8.1	6.479	12.5	-	

다. 공공시설 정비계획

1) 도·로·

노·선·명	폭·원 (M)	연·장 (M)	시·점	종·점	결·정·근·거	비·고
중로·1류 1호선	20	125	지구계	지구계	건고 측 198호 (71.4.7)	기 결정
중로 1류 2호선	20	150	"	"		신설
중로·2류 1호선	15	70	"	"	건고 측 198호 (71.4.7)	기 결정
소로·2류 1호선	8	52	"	중로 1류 29. 선		일부 신설

라. 건축물 정비 계획

구 분	제 1 치 구	제 2 치 구
건축 시설주용도	공동주택	공동주택
건폐율	28% 이하	25% 이하
용적률	280% 이하	260% 이하
층수 및 높이	15층 이하, 45m 이하	15층 이하, 45m 이하

* 첨부 : 삼기 제 4구역 사업계획 결정도